

## 충청북도수목및산야초연구센터설치운영조례안

### 검 토 보 고 서

#### 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0년 6월 13일

나. 회부일자 : 2000년 6월 13일

#### 3. 제안 이유

생물다양성협약으로 인한 국제 종자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 
무한한 잠재력 개발과 우수 유전자를 지닌 도내 자생식물  
의 고유품종 보존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 
조사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#### 4. 주요 골자

충청북도내 산림에 자생하고 있는 희귀수목, 산야초 등의  
보존과 연구로 국제종자 경쟁력 확보와 자생식물에 대한  
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연구센터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 
것으로

◦ 연구센터의 구성 및 위촉, 임기, 위촉해제

(안 제4조, 제5조, 제6조)

- 센터장 1인과 6명이내의 연구원으로 구성하고 3년의 임기로 위촉할 수 있으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함

(안 제4조 제5조)

- 센터장, 연구원 본인이 해촉을 요청하거나 업무관련 비리가 있거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6조)

◦ 연구과제의 선정, 승인, 결과보고

(안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)

- 연구센터에서는 도지사, 연구소장이 부여하는 과제를 연구하고 자문에 응하며 필요한 경우 자체연구과제를 선정 연구 (안 제7조)

- 선정된 사업 및 연구과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필요시 연구소장이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8조내지 9조)

- 연구가 끝나면 연구결과를 연구소장의 심사를 받아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함 (안 제10조)

- 예산지원을 통한 연구활동비 및 여비지급
  - (안 제10조, 제11조, 제12조)
    - 연구센터의 센터장과 연구원에게 연구활동비와 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
- 연구센터에서 나온 연구결과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행사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
  - (안 제13조)

## 5. 검토 의견

- 충청북도수목및산야초연구센터설치운영조례안은 도내 산림에 자생하고 있는 희귀수목, 산야초 등을 보존하고 육성, 보급시키고자 산림환경연구소내에 연구센터를 설치·운영하려는 것으로
-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현 산림환경연구소의 기능으로도 연구사업 추진이 가능할것으로 별도 조례제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